

[일련번호: 1]

강원도

주의·시정(회수) 요구

제 목 휴가사용 및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0. 1. 20. 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에 따르면 공가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청 소방정책과-2237(2019. 4. 4.) “소방직무관련 자격인증 시험 응시관련 복무처리 방안 알림”에 따르면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소방청에서 정책적으로 자격·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시험, 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 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시험,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경우는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으로 처리하고,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기개발의 성격이 강한 자격 시험의 경우 연가로 처리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시행 2018. 7. 1.]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출장의 경우 출장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인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거나,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0000. 00.~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확인한바 아래 <표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과 같이 총 5명이 부당하게 공가를 사용하였다.

<표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순번	대상자	공가사용일	휴가일수	휴가사유	비고
1	소방○ ○○○	2020.09.22.	1일	2급 인명구조사 필기평가	- 초과서식에 “주출”로 입력 (수당 회수대상 아님)
2	소방○ ○○○	2022.01.24.	1시간 30분	소방드론 전문교육기관 TF팀 참석	- 초과수당 회수 없이 근무상황 수정
3	소방○ ○○○	2022.04.24.	1시간 30분	기본차량 운전능력 향상반 교육입교	- 초과수당 회수 없이 근무상황 수정
4	소방○ ○○○	2022.06.12.	3시간	수상인명구조 특별훈련 교육입교	- 초과수당 회수 없이 근무상황 수정
5	소방○ ○○○	2022.08.09.	2시간 15분	병원전외상처치술 교육참석	- 초과수당 회수 없이 근무상황 수정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사용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하며, 아래 각 목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건강검진 및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같은 날 받는 경우에도 한하여 공가를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아래 <표2> “건강검진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과 같이 ○○소방서 ○○○○과 소방○ ○○○은 ○○소방서 근무 당시 2020. 7. 8.(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고, 같은 해 2020. 11. 18.(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경우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공가를 사용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2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2> 건강검진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순번	대상자	소속 (행위당시)	공가사용일		내용	연가보상비 회수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	금액
1	소방○ ○○○	○○소방서 ○○○○과	2020. 7. 8.	2020. 11. 18.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2일 사용	1일	82,250원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연가가산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3)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0. 10. 20. 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⁴⁾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 대상기간(0000. 00.~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표3>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전년도 임용된 신규자 4명이 다음 연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 사유로 연가를 부적정하게 가산한 사실이 있다.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4)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표3>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순번	대상자	연가가산 미적용 사유	연가산정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회수	
			연도	법정	가산	계	사용			미 사용	대상	금액 (원)
							사용	연가 보상	저축			
1	소방○ ○○○	신규임용 (2020.3.16.)	2021	15일	1일	16일	11일 02:00	2일	06:00	4일	*미사용 연가가 2일 이상	
2	소방○ ○○○	신규임용 (2020.3.16.)	2021	21일	1일	22일	5일 07:30	12일	3일 00:30	1일	1일	70,870
3	소방○ ○○○	신규임용 (2020.3.16.)	2021	15일	1일	16일	11일 07:00	4일	01:00	0일	1일	55,190
4	소방○ ○○○	신규임용 (2020.8.20.)	2021	15일	1일	16일	12일 03:00	3일	05:00	0일	1일	52,120
계(4명)											3일	178,18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및 표준인사시스템 재구성

○○소방서 ○○○○과 소방○ ○○○은 2000. 0. 00.부터 2000. 0. 0.까지 ○
○소방서 근무 당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에 따라 건
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
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0. 0.(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한 후 같은 해 2000. 00.
00.(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위해 또다시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시행 2020. 7. 30.]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2. 11. 소방청훈
령] 제2조,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시행 2022. 7. 15. 소방청훈령] 제
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
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
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를 사용한 5명 중 2022년 행위자 4명에 대한 복무사항을 연가로 수정 반영하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위해 2회 공가를 사용한 소방○ ○○○과 연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한 4명 중 미사용 연가가 없는 3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260,43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급량비, 여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수당, 급량비 및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 지급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9. 4. 16. 대통령령]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17. 7. 17. 대통령령]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 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 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00. 00.~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과 같이 총 10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 78,000원을 중복 지급하였다.

<표1>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대상자	일자	출장내역				매식비 집행 (반납)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비		
					수령일	금액	
1	소방○ ○○○	2019.11.07.	춘천시	소방의날 표창장 수령	2019.11.11.	65,200	7,000
2	소방○ ○○○	2020.05.21.	원주시	의무소방 신규병력 인수	2020.05.25.	81,200	7,000
3	소방○ ○○○	2020.07.29.	평택시	굴절차 출고	2020.07.31.	57,400	8,000
4	"	2020.09.08.	원주시	신형구급차 인수	2020.09.10.	44,000	8,000
5	"	2020.09.29.	화성시	물탱크차량 인수	2020.10.06.	147,400	8,000
6	소방○ ○○○	2021.03.04.	횡성군	재난망단말기 반납	2021.03.10.	30,000	8,000
7	소방○ ○○○	2021.04.18.	속초시 양양군	전조주의보에 따른 관내 및 관외 산림인접지역 순찰	2021.04.23.	30,000	8,000
8	"	2021.10.27.	고성군	유관기관 안전업무 협의	2021.11.01.	30,000	8,000
9	소방○ ○○○	2021.12.02.	강릉시	신규의무소방원 인수	2021.12.20.	30,000	8,000
10	소방○ ○○○	2021.12.07.	고성군	인접관서 공조방안 모색 등	2021.12.10.	30,000	8,000
계							78,0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1. 9. 30. 인사혁신처예규]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의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 일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⁵⁾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시행 2019. 7. 26. 강원도조례]가 2019. 7. 26. 개정·시행되면서 숙박비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⁶⁾로 지급하고,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급하며, 자동차 이용 시 버스운임을 적용하고, 공무원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공문⁷⁾을 시달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3.여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운임·숙박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6) 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제 1 호 (3급 이상)	실 비
제 2 호 (4급 이하)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00. 00.~현재)동안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 과 같이 총 9건에 대하여 자가용 동승자 12명에게 운임비 388,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

순번	출장내역				구분	운임비 (반납)	
	일자	장소	목적	출장자			
				직급			성명
1	2022.01.11.	춘천시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명장 수여식 참석	소방○	○○○	동승자	28,600
				소방○	○○○	운전자	-
2	2022.01.26.	횡성군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강화 토론회 참석	소방○	○○○	동승자	37,600
				소방○	○○○	동승자	37,600
				소방○	○○○	운전자	-
3	2022.03.31.	음성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차량 운전교육	소방○	○○○	동승자	49,800
				소방○	○○○	운전자	-
4	2022.05.03.	서울시	급기가압 제연설비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참석	소방○	○○○	동승자	30,200
				소방○	○○○	운전자	-
5	2022.05.28.	태백시	2022년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사전훈련	소방○	○○○	동승자	40,600
				소방○	○○○	동승자	40,600
				소방○	○○○	운전자	-
6	2022.06.16. ~06.17.	고성군	2022년 시설 장비분야 소통 공감 연찬회 참석	소방○	○○○	동승자	7,200
				소방○	○○○	동승자	7,200
				소방○	○○○	운전자	-
7	2022.06.13. ~06.17.	이천시	119구조대 수상인명구조 특별훈련	소방○	○○○	동승자	40,200
				소방○	○○○	운전자	-
8	2022.07.12.	태백시	인명구조사2급 실기시험 응시	소방○	○○○	동승자	40,600
				소방○	○○○	운전자	-
9	2022.07.21.	춘천시	소방공무원 갑질행위 근절 특별교육 참석	소방○	○○○	동승자	28,600
				소방○	○○○	운전자	-
계						388,8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7) 소방행정과-16039호(2019.7.30.)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관련 처리절차 안내”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식비가 포함된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10명에게 지급한 야근매식비 78,000원과 관외출장 동승자 12명에게 지급한 운임비 388,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경고·시정 요구

제 목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표1]과 같이 총 204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소계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소계	육내	육외 탱크	육내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육외
204	-	43	29	4	-	10	161	1	10	53	50	46	1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허가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1. 10. 21.](이하 “위험물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6조,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치 및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⁹⁾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완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¹⁰⁾(常置場所)는 위치·구조 및 설비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설치(변경)할 때에는 상치장소도 포함하여 설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법」[시행 2022. 3. 8.] 제52조, 제63조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

8)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허가(변경)신청서
2. 완공검사필증 원본(변경허가)
3.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한 도면
4. 구조설비명세표
5.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가사용승인신청 시)
6.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등

9)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기준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3.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및 옥외탱크저장소(50만 리터 이상인 것)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에 관한사항이 적합할 것

10) 상치장소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지 않을 때 주차해 두는 장소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도로점용허가¹¹⁾)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¹²⁾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방청에서 발간한 “위험물실무해설서”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심사에 있어서 규칙상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실제로 저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완공검사 신청 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경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표2]와 같이 2건의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및 변경허가 처리를 하면서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가심사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소유권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장원주유소의 경우 2021. 1. 1. 소유주 ○○○이 ○○시 ○○동 000-0번지(소유주: ○○○)의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주유소의 경우 ○○시 ○○동 0000-00번지(소유주: ○○○), ○○동 000-00(소유주: ○○○○○)의 도로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주유소의 경우 이동탱크저장소(00모0000, 허가번호 제00-00000

1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는 공작물 등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 하려는 때에도 같다.

12)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도로법」 제63조 재구성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3.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000000호)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2020. 12. 17. 완공검사 시 허가사항의 상치장소에 아래 [그림1]과 같이 상치장소 옆 1층의 건축물과의 거리가 2.25m(법정거리: 3m) 이내 임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등 2건의 설치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현황

대상명 (차량번호)	구분	허가신청일	완공검사필증 교부일	허가번호	제조소등 구분	품 명	저장 용량
○○주유소 (00더0000)	설치 허가	2020-07-14	2020-07-20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500ℓ
○○○○○주유소 (00모0000)	설치 허가	2020-12-15	2020-12-17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1,375ℓ
○○○주유소 (00가0000)	설치 허가	2021-10-29	2021-11-01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주유소 (00가0000)	변경 허가	2022-09-16	2022-09-21	제00-00000-000000호	이동탱크 저장소	제4류 2석유류	3,000ℓ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허가 부적정 사항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225cm)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건축물과의 거리(110cm)



상치장소 관련사진(○○○주유소)



강원도공간포털시스템 재구성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 과태료 부과 누락

「위험물법」[시행 2021. 10. 21.] 제10조, 제11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을 양도·양수한 때에는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261호, 시행 2022. 5. 30.]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지위승계는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승계인의 지위승계 신고의무를 없는 것으로 보나 허가청은 승계인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용도폐지는 용도폐지 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의 해당 사항을 정리(말소)할 수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21. 1. 1.] 제19조, 제23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 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

하여 조회하여 소유권 이전 및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해야 하며, 제조소 등의 신규·변경허가, 지위승계, 용도폐지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현황관리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소방서에서 제출한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자료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직권 용도폐지한 9개소 중 크리스탈모텔과 한일모텔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¹³⁾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3] 제조소 등 등록말소 현황

연번	구분	제조소등 구분	변동일	변동사항	조치할 사항
1	용도폐지	○○○ ○○빌라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5-03-23 건축물 말소	22-02-08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2	용도폐지	○○○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7-09-05 건축물 말소	22-02-08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3	용도폐지	○○○ ○○물산 옥내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2014년 추정	22-02-10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4	용도폐지	○○○ ○○실업 옥내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05-06-24 건축물 말소	22-02-11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5	용도폐지	○○○ ○○실업 옥외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05-06-24 건축물 말소	22-02-11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6	용도폐지	○○○ ○○실업 옥외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05-06-24 건축물 말소	22-02-11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7	지위승계	○○○, ○○○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6-04-28	매매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8	용도폐지	○○○, ○○○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20-09-21 건축물 말소	22-02-24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부과
9	지위승계	○○○, ○○○, ○○○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3-10-18	상속에 의한 승계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10	용도폐지	○○○, ○○○, ○○○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9-03-29 건축물 말소	22-02-24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부과
11	용도폐지	○○○○○○○○○조합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09-09-09 건축물 말소	22-02-25 직권 용도폐지	과태료 미부과 (제척기간 종료)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3)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3. 위험물 제조소등 예방규정에 관한 사항

「위험물법」[시행 2021. 10. 21.]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2. 1. 1.] 제15조 및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제63조에 따르면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¹⁴⁾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예방규정 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법」 시행규칙 부칙[총리령 제1178호, 시행 2016. 1. 1.] 제3조에 따르면 관계인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출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2016. 12. 31.까지 개정규정¹⁵⁾에 맞게 예방규정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2015. 7. 17.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¹⁶⁾” 을 문서를 시달하면서 개정 이전 관할 구역 내의 예방규정을 제출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가 2016. 12. 31.까지 위험물 사고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을 예방규정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청 업무처리지침(2009. 3. 27.)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 에 따르면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

14)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중 보일러·버너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6) 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13307(2015.07.17.)호

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¹⁷⁾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2015. 7. 17. 소방본부에서 시달된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 제출된 예방규정대상의 설치자에게 위험물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예방규정을 변경 제정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 변경 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려하거나 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제출 현황에 대하여 걱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은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았고, ○○○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2022. 4. 28. 위험물사고 대응훈련에 관한 추가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4] 예방규정 제출현황

연번	제조소등 구분	제출일	변동일	개정내용
1	○○○○ 일반취급소 (제00-00000-000000호)	-	-	2007. 2. 8. 최초 미제출
2	○○○○○급유소 옥외탱크저장소 (제00-00000-000000호)	14-01-29	19-03-25	위험물사고 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추가 작성 제출
3	○○○ 일반취급소 (제00-00000-000000호)	-	22-04-28	2020. 9. 10. 최초 미제출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7) 예방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업무지침(2009. 3. 27.)

1.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경우
- 나. 자체소방대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소방차의 증감은 제외함)
- 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예방방법 또는 진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예방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더0000) 설치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지적상 도로를 주유취급소의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모0000) 설치허가” 는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3m 이상(실제거리: 2.25m) 확보되지 않는 등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 일반취급소” 는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하는 대상이나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처분 없이 위험물 규제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과 소방○ ○○○은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가 0000) 변경허가” 업무담당자로서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치장소의 위치에 대하여 소유권(임차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지적상 도로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없이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00가 0000) 설치허가” 는 상치장소 옆 건축물과의 거리가 5m 이상(실제거리: 1.1m) 확보되지 않는 등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모텔 지하탱크저장소” 는 건축물이 말소될 때까지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처분 없이 위험물 규제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위험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도로법을 위배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의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방○ ○○○,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의 이동탱크 저장소 상치장소에 대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② 제조소 등 건축물 말소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모텔, ○○모텔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경고·개선 요구

제 목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표1] 현장방염성능검사 및 성적서 발급 현황

(단위 : 건)

계	2022. 1. 1. ~ 현재	2021년	2020년	2019. 10. 1. ~ 12. 31.
64	20	17	24	3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¹⁸⁾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 가운데 합판·목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시행 2022. 11. 1.] 제3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에 시공명세서를 첨부하고,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험체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출된 목재·합판을 방염성능검사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¹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방청(산업과)에서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 시험체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일치성 확인 강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체 채취할 부분에 미리 방염처리업자와 영업주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 후 자필기록이 있는 시험체와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업무처리 지침²⁰⁾을 시달하였다.

또한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21-7호, 시행 2021. 1. 14.] 제7조의2에 따르면

18) 방염대상물품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로는 제외한다.
 -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나. 합판이나 목재
 -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19) 2012. 2. 3.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이 현 소방용품 규칙으로 개정되며 반환규정 신설됨
20) 소방청 산업과-5179(2014.10.16.) 「방염성능검사 업무 처리지침 알림」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방법은 제출된 시험체를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다음 방염성능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접수하면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의 시험체를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 제출하였는지 확인 했어야 하며, 제출된 시험체를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곧바로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 동안 수분을 제거한 다음 즉시 방염성능시험을 했어야 하고, 제출된 시험체를 방염성능검사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방염성능 측정방법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된 시험체를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 습기 제거 후 이를 데시케이터 안에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방치하였다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염성능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현장에서 시험체 채취할 부분에 미리 방염처리업자와 영업주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 후 자필기록이 있는 시험체와 사진을 함께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된 시험체를 방염성능검사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방염성능 측정방법(건조 ~ 방염성능시험) 미준수 현황

연번	방염처리대상	방염처리물품	접수일시	항온건조기 사용시간	데시케이터 사용시간	방염성능시험
1	○○○○○○○○	원목+방염도료	2019. 10. 25. 10:00	2019. 10. 25. 10:00 ~ 10. 26. 10:00	2019. 10. 26. 10:00 ~ 12:00	2019. 10. 28. 13:00 ~ 14:00
2	○○○○ ○○○○	원목+방염도료	2019. 11. 4. 10:00	2019. 11. 4. 10:00 ~ 11. 5. 10:00	2019. 11. 5. 10:00 ~ 12:00	2019. 11. 7. 09:00 ~ 10:00
3	○○○○	원목+방염도료	2019. 12. 19. 11:00	2019. 12. 19. 11:00 ~ 12. 20. 11:00	2019. 12. 20. 11:00 ~ 13:00	2019. 12. 24. 13:00 ~ 14:00

연번	방염처리대상	방염처리물품	접수일시	항온건조기 사용시간	데시케이터 사용시간	방염성능시험
4	○○○○○	원목+방염도료	2019. 12. 26. 14:00	2019. 12. 26. 14:00 ~ 12. 27. 14:00	2019. 12. 27. 14:00 ~ 16:00	2020. 1. 2. 11:00 ~ 12:00
5	○○○○○○○	원목+방염도료	2020. 1. 29. 09:00	2020. 1. 29. 09:00 ~ 1. 30. 09:00	2020. 1. 30. 14:00 ~ 16:00	2020. 2. 6. 09:30 ~ 10:40
6	○○○○○	원목+방염도료	2020. 2. 14. 09:00	2020. 2. 14. 09:00 ~ 2. 15. 09:00	2020. 2. 17. 10:00 ~ 12:00	2020. 2. 17. 13:00 ~ 14:00
7	○○○○○	원목+방염도료	2020. 2. 14. 09:00	2020. 2. 14. 09:00 ~ 2. 15. 09:00	2020. 2. 17. 10:00 ~ 12:00	2020. 2. 17. 13:00 ~ 14:00
8	○○○○	원목+방염도료	2020. 2. 24. 10:00	2020. 2. 24. 10:00 ~ 2. 25. 10:00	2020. 2. 25. 10:00 ~ 12:00	2020. 2. 26. 09:00 ~ 10:00
9	○○○○	원목+방염도료	2020. 3. 26. 10:00	2020. 3. 26. 10:00 ~ 3. 27. 10:00	2020. 3. 27. 10:00 ~ 12:00	2020. 3. 31. 09:00 ~ 10:00
10	○○○○○	원목+방염도료	2020. 5. 11. 10:00	2020. 5. 11. 10:00 ~ 5. 12. 10:00	2020. 5. 12. 10:00 ~ 12:00	2020. 5. 13. 09:00 ~ 10:30
11	○○○○○○○	원목+방염도료, 방염필름	2020. 7. 10. 10:00	2020. 7. 10. 10:00 ~ 7. 11. 10:00	2020. 7. 13. 09:00 ~ 11:00	2020. 7. 13. 11:00 ~ 12:00
12	○○○○○ ○○	원목+방염도료, 방염필름	2020. 7. 17. 10:00	2020. 7. 17. 10:00 ~ 7. 18. 10:00	2020. 7. 20. 09:00 ~ 11:00	2020. 7. 21. 10:00 ~ 11:00
13	○○○○	원목+방염도료, 방염필름	2020. 8. 7. 10:00	2020. 8. 7. 10:00 ~ 8. 8. 10:00	2020. 8. 10. 09:00 ~ 11:00	2020. 8. 10. 11:00 ~ 12:00
14	○○○○○○○ ○○○○○	원목+방염도료	2020. 9. 4. 10:00	2020. 9. 4. 10:00 ~ 9. 5. 10:00	2020. 9. 7. 09:00 ~ 11:00	2020. 9. 7. 11:00 ~ 12:00
15	○○○○○ ○○	원목+방염도료	2020. 9. 18. 11:00	2020. 9. 18. 11:00 ~ 9. 19. 11:00	2020. 9. 21. 09:00 ~ 11:00	2020. 9. 21. 11:00 ~ 12:00
16	○○○○○○○	원목+방염도료	2020. 11. 23. 10:00	2020. 11. 23. 10:00 ~ 11. 24. 10:00	2020. 11. 24. 13:00 ~ 15:00	2020. 11. 24. 16:00 ~ 18:00
17	○○○	원목+방염도료	2021. 2. 3. 10:00	2021. 2. 3. 10:00 ~ 2. 4. 10:00	2021. 2. 4. 10:00 ~ 12:00	2021. 2. 4. 15:00 ~ 17:00
18	○○○○	원목+방염도료	2021. 3. 5. 09:00	2021. 3. 5. 09:00 ~ 3. 6. 09:00	2021. 3. 8. 10:00 ~ 12:00	2021. 3. 8. 15:00 ~ 17:00
19	○○○○○○○ ○○○○○○○	원목+방염도료	2021. 3. 5. 09:00	2021. 3. 5. 09:00 ~ 3. 6. 09:00	2021. 3. 8. 10:00 ~ 12:00	2021. 3. 8. 15:00 ~ 17:00
20	○○	원목+방염도료	2021. 3. 12. 09:00	2021. 3. 12. 09:00 ~ 3. 13. 09:00	2021. 3. 15. 09:00 ~ 11:00	2021. 3. 15. 11:00 ~ 12:00
21	○○○○	원목+방염도료	2021. 7. 27. 13:00	2021. 7. 27. 13:00 ~ 7. 28. 13:00	2021. 7. 28. 13:00 ~ 15:00	2021. 7. 29. 09:00 ~ 09:30
22	○○○○○○○	원목+방염도료, 방염필름	2021. 7. 27. 13:00	2021. 7. 27. 13:00 ~ 7. 28. 13:00	2021. 7. 28. 13:00 ~ 15:00	2021. 7. 29. 09:00 ~ 09:30
23	○○○○○○○	원목+방염도료	2021. 9. 9. 13:00	2021. 9. 9. 13:00 ~ 9. 10. 13:00	2021. 9. 13. 13:00 ~ 15:00	2021. 9. 15. 09:00 ~ 09:30
24	○○○○○○○○○	원목+방염도료	2021. 10. 13. 10:00	2021. 10. 13. 10:00 ~ 10. 14. 10:00	2021. 10. 14. 10:00 ~ 12:00	2021. 9. 15. 09:00 ~ 09:30
25	○○○	원목+방염도료	2021. 10. 15. 10:00	2021. 10. 15. 10:00 ~ 10. 16. 10:00	2021. 10. 18. 10:00 ~ 12:00	2021. 10. 19. 09:00 ~ 09:30

연번	방염처리대상	방염처리물품	접수일시	항온건조기 사용시간	데시케이터 사용시간	방염성능시험
26	○○○○○	원목+방염도료	2021. 11. 15. 10:00	2021. 11. 15. 10:00 ~ 11. 16. 10:00	2021. 11. 17. 10:00 ~ 12:00	2021. 11. 18. 10:00 ~ 12:00
27	○○○○	원목+방염도료	2021. 11. 18. 10:00	2021. 11. 18. 10:00 ~ 11. 19. 10:00	2021. 11. 23. 10:00 ~ 12:00	2021. 11. 25. 10:00 ~ 12:00
28	○○○○ ○○○	원목+방염도료	2021. 12. 8. 10:00	2021. 12. 8. 10:00 ~ 12. 9. 10:00	2021. 12. 9. 10:00 ~ 12:00	2021. 12. 10. 09:00 ~ 10:00
29	○○○○○ ○○○○	원목+방염도료	2022. 3. 3. 10:00	2022. 3. 3. 10:00 ~ 3. 4. 10:00	2022. 3. 7. 10:00 ~ 12:00	2022. 3. 8. 09:00 ~ 10:00
30	○○○○○○○	원목+방염도료	2022. 3. 25. 10:00	2022. 3. 25. 10:00 ~ 3. 26. 10:00	2022. 3. 28. 10:00 ~ 12:00	2022. 3. 29. 09:00 ~ 10:00
31	○○○○○○○ ○○○○	원목+방염도료	2022. 5. 24. 10:00	2022. 5. 24. 10:00 ~ 5. 25. 10:00	2022. 5. 25. 10:00 ~ 12:00	2022. 5. 26. 09:00 ~ 11:00
32	○○○	원목+방염도료	2022. 5. 24. 10:00	2022. 5. 24. 10:00 ~ 5. 25. 10:00	2022. 5. 25. 10:00 ~ 12:00	2022. 5. 26. 09:00 ~ 11:00
33	○○○○○○○ ○○○○	원목+방염도료	2022. 6. 14. 16:00	2022. 6. 14. 16:00 ~ 6. 15. 16:00	2022. 6. 15. 16:00 ~ 18:00	2022. 6. 16. 09:00 ~ 11:00
34	○○○○	원목+방염도료	2022. 8. 3. 10:00	2022. 8. 3. 10:00 ~ 8. 4. 10:00	2022. 8. 4. 10:00 ~ 12:00	2022. 8. 4. 14:00 ~ 15:00
35	○○○○○ ○○○○	원목+방염도료, 방염필름	2022. 8. 3. 10:00	2022. 8. 3. 10:00 ~ 8. 4. 10:00	2022. 8. 4. 10:00 ~ 12:00	2022. 8. 4. 14:00 ~ 15: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서 ○○○○과 소방○ ○○○는 제출된 시험체를 데시케이터에서 2시간 습기 제거 후 이를 데시케이터 안에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방치하였다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염성능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현장에서 시험체 채취할 부분에 미리 방염처리업자와 영업주 이름 등을 자필로 기재 후 자필기록이 있는 시험체와 사진을 함께 제출받지 않았고, 제출된 시험체를 방염성능검사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등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시설법」 제13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

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방염성능기준 규정을 위배하여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건조 및 수분 제거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염성능검사 후 성적서를 교부한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현장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 시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시료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측정토록 하고, 제출된 시료에 대한 진위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이 보장되도록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시정·통보 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7. 13.](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528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다.

[표1]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휴게·제과	일반	유흥	단란	영화	노래	목욕장업	게임PC복합	기타 ²¹⁾
528	40	188	77	99	2	63	5	34	2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2. 3. 15.] 제9조,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안전시설 등²²⁾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²³⁾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한

21) 고시원 2개소,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17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

22) 안전시설 등

1.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기타 안전시설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 2022. 4. 20.]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²⁴⁾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²⁵⁾의 관계인은 [표2]와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산정된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표2] 근린생활시설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종류

구분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 이상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재구성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증축을 하기 위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구획 및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시점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2020. 5. 26. 신규 등록한 ○○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하면서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아래 [그림1]과 같이

24)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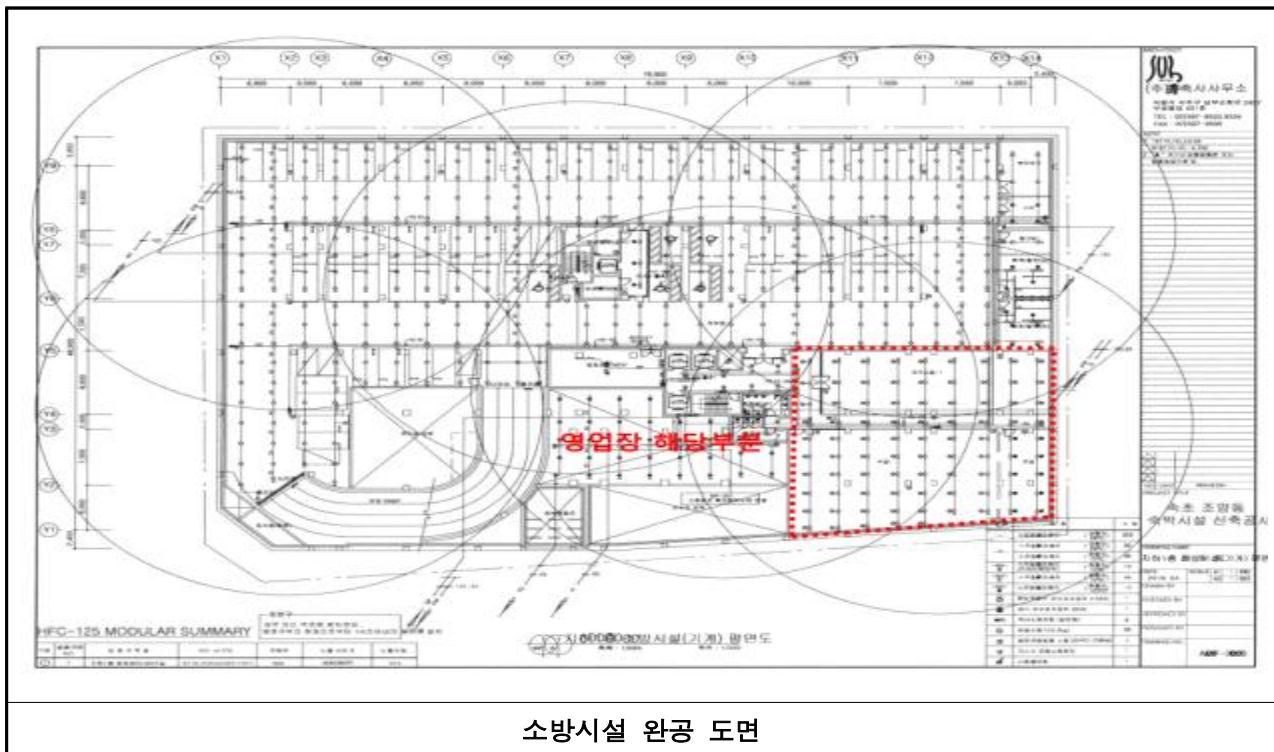
2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에 해당 대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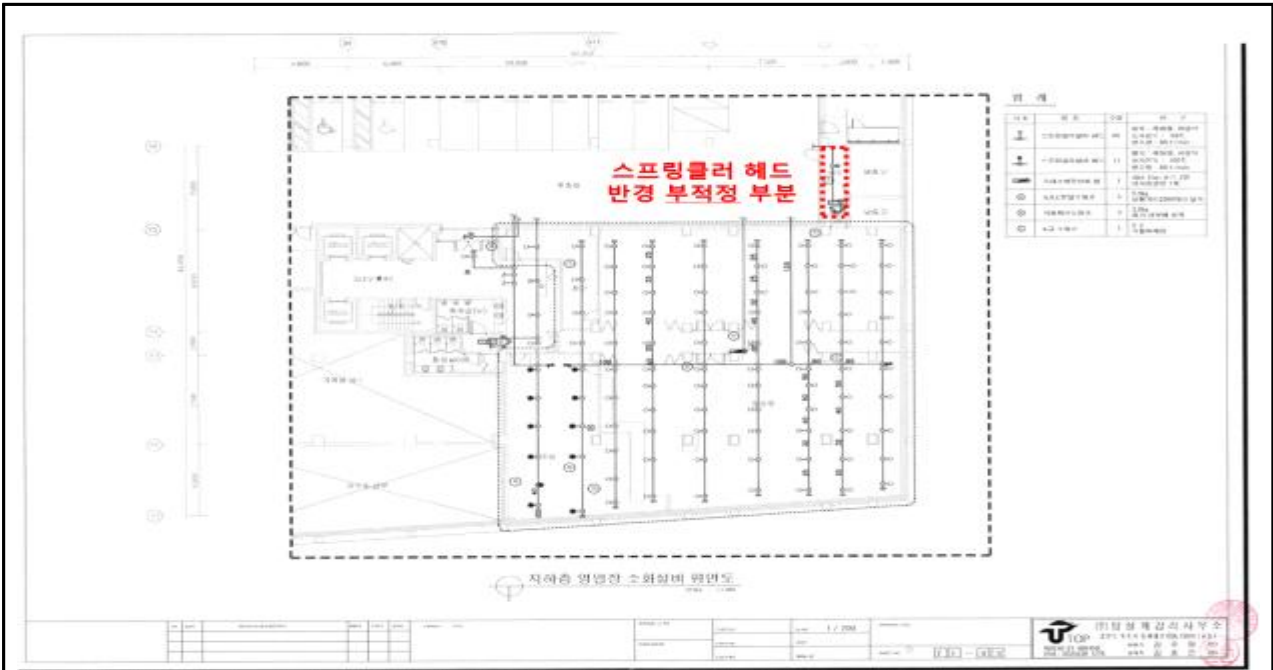
다중이용업소 설치를 위해 별도 구획을 하며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이 부적합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3] 해송 현황

업소명	○○	소재지	○○○ ○○○로 00	
사업자	○○○		업종	일반음식점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18,905.62㎡	바닥면적:605.61㎡
	영업장설치층 : 지하1층		사용면적:605.61㎡	구획된 실(룸)의 수 : 2

[그림1] ○○





안전시설 등 완공 도면



복도 내 스프링클러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확인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 7. 17. 신규 등록된 ○○○○○○○○○○○ ○○점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 등 완공 당시 아래 [표4]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 4층(1동), 연면적 533.42㎡ 규모로 신고되었으나, 아래 [그림2]와 같이 ○○○○○○○○○○○ ○○점에서는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증축)하면서 별관동에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4] ○○○○○○○○○○○(○○○) 현황

업소명	○○○○○○○○○○ ○○점	소재지	○○○ ○○○로 000	
사업자	○○○○○ ○○○		업종	휴게음식점
규 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연면적:533.42㎡	바닥면적:533.42㎡
	영업장설치층 : 지상1~4층		사용면적:533.42㎡	구획된 실(룸)의 수 : 6

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재구성

[그림2] ○○○○○○○○○○○(○○○) 불법 증축 내용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의 스프링클러 헤드 반경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 ○○점”은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증축)한 사실에 대하여 ○○○ 건축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증축된 부분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19년	4	123	2	71	1	18	1	34
2020년	4	127	3	95	-	-	1	32
2021년	4	137	3	99	-	-	1	38
2022년	4	142	3	103	-	-	1	39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²⁶⁾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²⁷⁾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²⁸⁾을 연간 24시간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2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p>□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 기본교육 이수 전담의용소방대원: 월 2시간 이상(연 24시간) → 연간 12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 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 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 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26)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전문교육을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 연간 24시간의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교육훈련을 실시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에 해당하는 17명 중 10명에 대하여 해임을 하였으나, 7명은 해임 조치하지 않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연번	의소대명	일반 전담	성 명	임 용 일	해당연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기준 미달시간	해 임 일
1	○○남성대	일반	○○○	2011-03-25	2019	이수	0	6	2020-1-15
2	○○남성대	일반	○○○	2014-05-01	2019	이수	4	2	2020-1-15
3	○○남성대	일반	○○○	2017-07-14	2019	12	해당없음	6	2020-1-15
4	○○여대	일반	○○○	2012-04-26	2019	이수	4	2	2020-1-15
5	○○여대	일반	○○○	2013-02-05	2019	이수	2	4	2020-1-15
6	○○여대	일반	○○○	2015-04-01	2019	이수	0	6	2020-1-15
7	○○전문대	일반	○○○	2017-12-01	2019	14	해당없음	4	2021-6-11
8	○○전문대	일반	○○○	2018-12-11	2020	16	해당없음	2	미조치
9	○○전문대	일반	○○○	2018-12-11	2020	15	해당없음	3	미조치
10	○○전문대	일반	○○○	2018-12-11	2020	14	해당없음	4	2021-1-20
11	○○전문대	일반	○○○	2018-12-11	2020	14	해당없음	4	미조치
12	○○남성대	일반	○○○	2019-05-14	2021	17	해당없음	1	미조치
13	○○전문대	일반	○○○	2016-07-01	2021	이수	0	6	2022-1-13
14	○○전문대	일반	○○○	2018-12-11	2021	이수	2	4	2022-1-13
15	○○남성대	일반	○○○	2020-06-25	2022	14	해당없음	4	미조치
16	○○남성대	일반	○○○	2020-06-25	2022	11	해당없음	7	미조치
17	○○남성대	일반	○○○	2020-06-25	2022	17	해당없음	1	미조치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1. 8.]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업무 등 제7조²⁹⁾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2022년 7월 중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남성 의용소방대 ○○○ 외 1명의 경우 2022년 7월 15일의 교육훈련 시간(15:00~17:00) 과 소집명령 시간(13:00~16:00)이 중복되는 등 지급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9)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4]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의소대명	활동대원	활동일시		확인결과	소집수당 환수(원)
			정기교육	소집활동		
계	3개대	5명	-	-	-	84,700
1	○○남성대	○○○	2022.07.15.(금) 15:00~17:00	2022.07.15.(금) 13:00~16:00	- 15:00~16: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기초소방시설 배부	12,100
		○○○				12,100
2	○○남성대	○○○		2022.07.15.(금) 13:00~16:00	- 13:00~16:00(3시간 오기) - 기초소방시설 배부 미참석	36,300
3	○○여성대	○○○	2022.07.15.(금) 15:00~17:00	2022.07.15.(금) 13:00~16:00	- 15:00~16:00(1시간 중복) - 정기교육 / 기초소방시설 배부	12,100
		○○○				12,100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7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84,7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주의·시정 요구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소방서 ○○센터 소방○ ○○○

② ○○소방서 ○○센터(前 ○○소방서 ○○센터) 소방○ ○○○

③ ○○소방서 ○○센터 소방○ ○○○

④ ○○소방서 ○○센터 소방○ ○○○

⑤ ○○소방서 119구조대(前 ○○소방서 ○○센터) 소방○ ○○○

⑥ ○○소방서 ○○센터(前 ○○소방서 ○○센터) 소방○ ○○○

⑦ ○○○단 ○○○○대(前 ○○소방서 ○○센터) 소방○ ○○○

⑧ ○○소방서 ○○센터(前 ○○소방서 ○○센터)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강원도 규칙 제3256호, 시행 2022. 10. 14.] 제36조 제3항에 따라 [표1]과 같이 총 31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1]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지상식	지하식	비상소화장치 (지상식 포함)
	319	264	0	5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소방기본법」[시행 2022. 10. 27.]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7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60호, 시행 2022. 5. 23.] 제12조, 제13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훈령 제203호, 시행 2021. 2. 10.] 제31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보고를 통해 수리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대체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즉시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 총 20개소(2019년 19개소, 2021년 1개소)의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즉시 고장사실 전파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

연번	년도	관할	용수번호	고장발생보고일	수리완료일	대체용수 지정여부	전 직원 전파 여부
1	2019	○○	○○000호	2019-08-14	2019-12-12	X	X
2	2019	○○	○○000호	2019-09-04	2019-12-12	X	X
3	2019	○○	○○000호	2019-09-04	2019-12-12	X	X
4	2019	○○	○○000호	2019-09-04	2019-12-12	X	X
5	2019	○○	○○000호	2019-09-04	2019-12-12	X	X
6	2019	○○	○○000호	2019-09-06	2019-12-12	X	X
7	2019	○○	○○000호	2019-09-09	2019-12-12	X	X
8	2019	○○	○○000호	2019-09-09	2019-12-12	X	X
9	2019	○○	○○000호	2019-09-09	2019-12-12	X	X
10	2019	○○	○○000호	2019-09-09	2019-12-12	X	X
11	2019	○○	○○000호	2019-10-25	미처리	X	X
12	2019	○○	○○000호	2019-11-23	2019-12-12	X	X
13	2019	○○	○○000호	2019-12-08	2020-03-13	X	X
14	2019	○○	○○000호	2019-12-09	2020-03-13	X	X
15	2019	○○	○○000호	2019-12-09	2020-03-13	X	X
16	2019	○○	○○000호	2019-12-09	2020-03-13	X	X
17	2019	○○	○○000호	2019-12-09	2020-03-13	X	X
18	2019	○○	○○000호	2019-12-10	2020-03-13	X	X
19	2019	○○	○○000호	2019-12-16	2020-03-13	X	X
20	2021	○○	○○000호	2021-03-31	2021-05-28	X	X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고장발생으로 수리 요청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호의 경우 2019. 9. 6. 소방용수시설 점검 중 스프링클러 불량사항을 발견하여 2019. 12. 12. 수리완료 되었으나, [2019. 9. 27. / 2019. 10. 13.

/ 2019. 11. 24. / 2019. 12. 9.]의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총 7개소에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표3]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연번	년도	관할	용수번호	고장발생 보고일	고장사유	수리 완료일	조사부 부적정 사항	담당자
1	2019	○○	○○000 호	2019-09-06	스핀들 불량	2019-12-12	2019년 9월 6일 고장 발생보고 후 12월 9일 까지 사용 가능으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2	2019	○○	○○000 호	2019-11-23	스핀들 고장	2019-12-12	2019년 12월 12일 수리완료 이후에도 2020년 1월 사용 불가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3	2020	○○	○○000 호	2019-11-27	스핀들 불량	2020-03-13	2019년 12월 소방용수 조사부 미작성 및 2020년 1월, 2월 양호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4	2020	○○	○○000 호	2019-12-10	스핀들 불량	2020-03-13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양호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5	2020	○○	○○000 호	2020-04-14	스핀들 불량	2020-11-18	2020년 5월, 6월 양호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양호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6	2021	○○	○○000 호	2021-05-04	상수도 공사로 인한 한시적 사용 불가	2021-05-15	2021년 5월 13일 소방용수 조사부를 양호로 작성	○○○
7	2021	○○	○○000 호	2021-08-06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한시적 사용 불가	2021-10-15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용 가능으로 소방용수 조사부 작성	○○○

자료: ○○초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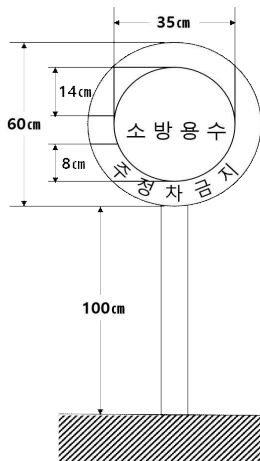
「소방기본법」[시행 2022. 10. 27.]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4] 소방용수표지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주정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정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 규격



-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자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재구성

또한 「도로교통법」[시행 2022. 10. 20.] 제32조 제6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용수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연 2회(해빙기, 동절기) 정밀조사, 월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하여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항시 소방용수시설의 위치·장소·관리실태 및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 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319개소(비상소화장치 55개소 포함)]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개소 [표5]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것·택시승강장이 설치된 것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보행안전법³⁰⁾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화단내에 설치된 것·영업장내에 설치된 것·소방차량 진입 불가능한 곳에 설치된 것 등을 양호로 결과 보고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약칭:보행안전법)

- 제2조(정의)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표5]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구획선 설치 및 설치위치 부적절 현황

연번	관할	관리번호 (위 치)	사진
1	○○센터	○○000호 (○○로 000, ○○○○○ 앞) ※ 택시승강장 설치	
2	○○센터	○○000호 (○○로 00, ○○○○○ 앞) ※ 주차구획선 설치	
3	○○센터	○○000호 (○○로 000번길 00 앞) ※ 터미널 주차장 및 펜스 설치	
4	○○센터	○○000호 (○○로 00, ○○매장 앞) ※ 횡단보도 앞에 설치	

5	○○센터	<p>○○○○호 (○○○ ○○○ 0-0 앞) ※ 영업장내 설치 (소화전 파손)</p>	
6	○○센터	<p>○○○○호 (○○로 000 앞) ※ 화단내 설치</p>	
7	○○센터	<p>○○○○호 (○○○○○길 00 ○○ 앞) ※ 소방차량 진입불가</p>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현장 확인 함)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9. 8.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19. 9. 6. 스핀들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19. 12. 12.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수리완료 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0.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20. 4. 14. 스핀들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0. 11. 18.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0.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21. 7.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21. 8. 6. 도로 확장공사로 한시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1. 10. 15.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2021. 8월, 9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사용 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8. 4. 23.부터 2020. 7. 1.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20. 4. 14. 스피들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0. 11. 18.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0. 5월, 6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구조대 소방○ ○○○은 2019. 11. 21.부터 2020. 7. 1.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19. 12. 10. 스피들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0. 3. 13.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19. 12월부터 2020. 2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은 2019. 11. 1.부터 2020. 7. 1.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19. 11. 27. 스피들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0. 3. 13.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19. 12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0. 1월, 2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단 ○○○○대 소방○ ○○○은 2019. 6. 12.부터 2021. 7. 4.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21. 5. 4. 상수도공사로 한시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1. 5. 15.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2021. 5. 13. 작성한 소방용수조사부에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 ○○○는 2019. 11. 21.부터 2022. 1. 16.까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면서 2019. 11. 23. 스피들 고장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19. 12. 12. 수리 완료된 이후인 2020. 1월 소방용수조사부에 사용 불가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소방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주의] 위 관련자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및 소화용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용수시설을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정비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